



제 2021-093호

중국 내 최초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상사조정 규칙 11월 1일부터 시행

저작권 중국사무소

■ 배경

- 중국 지식재산권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도 매년 증가하여 2013년 이래 전국 법원에서 229만 2,000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의, 판결하는 등 연평균 24.5%씩 증가하고 있음.
-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내에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한 다원화된 분쟁해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요구에 따라 중국무역촉진회의 조정센터는 최근 센터 내에 지식재산권 전문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, <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/중국국제상회 조정센터 지식재산권 분쟁조정규칙>을 공포하여 실시기로 함.
- 중국무역촉진위원회 조정센터는 중국 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해외상사 조정기관이자 최고인민법원이 처음으로 해외상사 분쟁 다변화 해결기구로 허가한 조정기구로, 최근 몇 년간 지식재산권 분쟁에 관한 조정 안건을 대량 처리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음.

■ 주요 내용

- 지식재산권 전문위원회는 중국, EU, 미국지식재산권 조정분야의 최고 인재들 중 전문가 10명을 전문위원으로 선임하였다고 밝힘.
- 이번에 발표된 지식재산권분쟁 조정규칙은 총칙, 조정절차, 기타절차와의 연계, 조정 참가자 규정, 부칙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의 접수범위, 조정신청, 조정원 지정, 조정방식, 조정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.
- 규칙은 사건당사자를 중심으로 조정절차 규범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공정, 공평함을 실현하기 위해 조정 규칙에 기술적인 내용을 처음으로 추가하여 관련 전문가나 관계기관을 초빙해 감정, 감사, 평가, 검사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함.





■ 평가

-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조정을 위해 이번에 설립된 지식재산권 전문위원회는 중국무역촉진위원회 조정센터와 국제상의 21개 쟁의해결기구가 다중적인 합동조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, 우리 권리자들도 향후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 시 분쟁조정 기구로 해당 기구를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■ 출처

- <https://baijiahao.baidu.com/s?id=1714950453879795779&wfr=spider&for=pc>